

제42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

일 시 2025년9월11일(목)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3)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5)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0)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9)
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70)
1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85)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70)
2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2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3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3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3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3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3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4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4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50.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5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5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5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5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5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56.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
5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5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5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6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6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6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7)
6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6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6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6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6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7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7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7)

7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74)
  7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7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
  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 

### 상정된 안건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 8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 8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 8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 8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3) ..... 8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5) ..... 8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0) ..... 8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 8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 8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9) ..... 8
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70) ..... 8
1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85) ..... 8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 9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 9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 9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 9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 9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 9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	9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	9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	9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	9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	9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0) .....	9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0) .....	9
2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	9
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	9
2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	9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	9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	9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	9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	9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	9
3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	9
3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	9
3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	9
3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	9
3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	9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	9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	9
4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	9
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	9
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	10
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	10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	10
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	10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	10
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	10
4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	10
50.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	10
5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	10
5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	10
5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	10
5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	10
5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	10
56.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 .....	10
5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	10
5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	10
5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	10
6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	10
6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	10
6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	10
6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7) .....	10
6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	10

6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07987) .....	10
6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08897) .....	10
6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09695) .....	10
6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	11
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	11
7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	11
7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7) .....	11
7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74) .....	11
7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	11
7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 .....	11
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	11
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	11

(10시03분 개의)

### ○소위원장 김원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 위해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행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원이 의원, 이종배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 위원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속도감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감사합니다.

그려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3)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5)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0)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9)
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0)
1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85)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70)
2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2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3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3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3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3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3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4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4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5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5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5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5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5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
5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5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5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6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6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6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6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6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6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6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 6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 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 7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 7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7)
- 7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4)
- 7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 7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
- 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항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 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10시05분)

○**소위원장 김원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6항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76건을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소위 심자자료 1권, 1쪽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납품대금 연동 적용 대상을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에너지 요금으로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에너지·용수 요금,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에너지·운송 요금, 이재관 의원님께서는 에너지·신에너지·신재생에너지·도시가스 요금 그리고 박성민 의원님께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재료와 에너지 요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요금 등은 주요 원재료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탁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고 그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수탁기업의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도입 취지 또 관계부처 의견들을 종합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에너지 부문에 대한 확대 적용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용수와 운송비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거나 노무비·이윤 등 복합적 성격이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의 의원님들 안 중의 어느 것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범위가 다 다른……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만 수용 가능하고, 에너지 요금의

경우에는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3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성원 위원 에너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에너지 범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원 위원 그러면 김정호 의원님이나 송재봉 의원님, 이재관 의원님 법안에는 부동의하시는 건가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용수와 운송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

○ 이재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시가스 요금은 포함되는 겁니까?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저희가 산업부에 확인해 본 결과 도시가스는 에너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의견 받았습니다.

○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운송비 뺀 나머지는 동의한다는 이야기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운송비와 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검토 필요한……

○ 소위원장 김원이 반대한다는 거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는……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것은 찬성·동의 그다음에 용수 요금하고 운송 요금을 포함하는 것은 반대?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재관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동의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이재관 의원님 안은 이게 에너지 정의 안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그리고 박성민 의원안은?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업의 핵심적인 권리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요? 그러면 박성민 의원님 안은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습니까?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표현이 빠지게 되는 것으로……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그 부분만 빼는 것으로?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질문할게요.

그런데 사실 용수 요금이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잖아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맞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 법이 정해진다고 해서 뭔가 정부의 부담이나 한전의 부담이나 이런 게 확 늘어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연동제 자체가 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지 못한 그런 가격변동을 추가로 반영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데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넣어 줘도 될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다만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런 부분은 다 감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하고 계약 이행 기간 동안에 갑자기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봐 주시면……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정부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처리할까요?

○서왕진 위원 그 표현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요금’이라고만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까, 아니면 여기 ‘에너지법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 수정의견 사항에 ‘에너지법상 제2조제1호와 3호의 에너지로 한다’라고 그렇게 저희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서왕진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일부 대안 의결이네요, 그렇지요?

더 있구나. 아직 멀었군요.

그러면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지금 방금 나온 내용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성소미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다음 논의로 넘어갈까요? 몇 페이지 일까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11쪽입니다.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세희 의원님과 송재봉 의원님이 공통으로 동일한 물품 등의 제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동일한 수탁기업에 위탁하는 행위로서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 그리고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연동제 미적용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를 공통적으로 제안하셨고, 송재봉 의원님께서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 탈법행위 금지행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기업의 제도 적용 회피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탈법행위는 구체적 행위태양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송재봉 의원님 안처럼 일정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송재봉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15쪽입니다.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불이익을……

○박형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발언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발언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좀 전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했는데 대통령령을 부처에서 정할 때 위의 두 행위와 유형이나 또는 그 정도가 비슷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면 백지위임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정한 두 유형과 비슷한 정도와 그다음에 그 강도를 가진 것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것을 추가 의견으로 남겨 놓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추가 의견만?

○박형수 위원 예, 의견만 남겨 놓고……

○소위원장 김원이 의견만? 추가 의견으로 남겨 놓고 일단은 가는 것이지요?

○박형수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1쪽의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유형 명확화 이것까지도 동의 다 되신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번.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15쪽입니다.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에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성소미 시행일에 관한 부칙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에너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시행일을 의원님 개정안마다 6개월, 그다음에 공포 후 1년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적응 기간과 또 법률 시행에 따른 준비 기간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탈법행위 명확화에 대한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리고 연동 약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제안해 주셨습

니다.

적용례 사항입니다.

개정 전후에 법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용례 규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개정하신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주요 에너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먼저 에너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시행일은 통상적으로 시행 기간은 6개월이지만 에너지 경비라는 게 다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측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성민 의원안과 같이 1년의 경과 규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탈법행위 명확화와 연동 약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 가야 되나요?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소위원장 김원이 계속 그냥 7항도 죽 가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성소미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다음, 18페이지인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와 같이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정·공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총과 은행연합회에서는 지표를 통한 평가 시에 금융기관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그리고 기업의 주관적 평가를 의식한 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라는 반대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상생금융지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도 동반성장지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라기보다는 이 상

생금융지수가 동반성장지수 내의 금융 트랙으로 포함되도록 문구 수정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서왕진 위원** 현재 동반성장지수는 어떻게 발표가 되거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50 대 50으로 합산해서 결정·공표하게 됩니다.

○**서왕진 위원** 오세희 의원님 제안으로는 그 평가지수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등 짜리를 제안했는데 현재 동반성장지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를 최우수 등급의 경우에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위의 하도급 직권조사도 최우수의 경우 2년간, 우수기업의 경우 1년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25쪽입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수탁·위탁거래의 대상 유형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약정을 ‘제조’에서 ‘제조등’으로 변경하고 ‘산업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제외한다’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받는 수·위탁거래 유형이 제조 분야로 한정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제조’라는 용어가 개정안 내용 외에도 법 2조 9호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제조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전문위원 수정의견 및 자구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좋은 법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31쪽입니다.

공정거래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관련 규정인 협행법 27조 2항 단서가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체계상 개정안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34쪽입니다.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 현재는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를 거쳐서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 개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다만 사실상 조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일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지난해 분쟁 조정 요청 접수 총 83건 중에 조사 불개시 사건이 28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불필요한 조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토’라는 문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정동만 위원 차관님, 이 검토 조정을 유지하되 또 실무 차원에서 검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없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검토 후에 조사를 하게 되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 부분은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형수 위원 잠깐만, ‘검토’라는 문구는 두고 뒤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로 바꾼다는 취지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아닙니다. ‘검토’를 ‘조사’로 바꾸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인데 저희는 ‘검토 또는 조사하여’로 해서 검토를 전제로 하고 필요시에 조사하는 그런 수정 문안을 드렸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수정 문안은 ‘검토 또는 조사하여’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은 37쪽입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사와 기술사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하고 위원 수를 현행 20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접수·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위원 수를 확대하고 또 건설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성소미 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 체계와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다음 페이지 법안을 보시면 ‘건축사, 기술사’를 기준 ‘변호사, 변리사’ 앞쪽으로 두셨는데 추가한다는 개념에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이후에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문구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38페이지 얘기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붙는 게 현행 법령과의……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형수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회를 할 때 전체가 한 위원회로 다 운영됩니까, 아니면 분과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가 조정부를 5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30명 중에서 5개로 나눠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각 3명씩 이내로 구성한 조정부를 분야별로 구성해서 조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허종식 위원 마음 같아서는 법률가를 맨 뒤에 넣었으면 좋겠구먼.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9항입니다.

39쪽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함으로써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 등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의견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은 부칙 관련 사안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소위원장 김원이 42쪽이지요?

○전문위원 성소미 예, 42쪽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검토의견은 시행일 이후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 정부 측 의견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그다음에 10항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수탁·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소위원장 김원이 페이지를 꼭 얘기해 주세요.

4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43쪽입니다.

수탁·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수탁·위탁거래가 종료된 지 3년이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조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조사개시에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

문에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수정의견을 몇 가지 제안했습니다.

첫째,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제척기간을 7년으로 늘려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에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위반과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제척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개정안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이나 상생법의 거래 유형을 참고해서 거래의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정안은 제척기간에 대한 예외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분쟁조정 요청이 제기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피해 구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수정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자료 비밀유지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이 아니라 7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입법 사례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 얘기대로 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 끝나는 날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으므로 동 조항에 대한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의 예외 사항으로 ‘동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에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10항까지는 다 된 건가요?

또 있습니까?

○**전문위원 성소미** 예.

○**소위원장 김원이**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은 49쪽입니다.

이번에는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위탁거래 시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분쟁조정 요청을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한편 법원 판결에 따라 개선요구 등이 취소되어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조사와 분쟁조정으로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파악이 됩니다.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중기부장관이 여기에 행정처분을 할 때 시정명령 외에도 시정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안을, 5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먼저 제27조의2 3항에 보시면 '28조 3  
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28조 3항은 아까 전문위원 설명대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이 필요하고, 4항의 경우에도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로 문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항은 다 된 거지요?

○**전문위원 성소미** 또 한 번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예, 부칙.

○**전문위원 성소미** 부칙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시  
정권고도 추가하셨기 때문에 이 부칙에 시정권고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이 모두 명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세희 위원님, 이 법안 하나로 세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위원님도 두 건이나…… 이럴 때 딱 법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종합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53쪽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공개를 원칙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 내용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은 55쪽입니다.

재심의 청구 절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임에도 그동안 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 수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재심 청구권은 보장되어 단순한 이의 신청으로 인한 절차 자연 최소화를 위해 ‘이의 제기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재심의 청구 요건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형평성을 위해서 소상공인 단체뿐만 아니라 상대 대기업 등에도 재심의 청구가 허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오세희 위원** 잠깐만……

○**소위원장 김원이** 예,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상당한 이유라는 게 모호한데 그것을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실 누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 누락 등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게 법률상 다른 법률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행정절차법에 보시면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서 ‘행정청은 처분 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오세희 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세희 위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쭉 나열하지요, 어떠어떠한 항목.

○**소위원장 김원이**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오세희 위원** 예.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것을 나열해 놓으면 어떨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하위법령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오세희 위원** 대통령령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열거를 하는 형태로……

○**오세희 위원** 열거를 쭉 해야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전문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오세희 위원님 의견을 지금 정부 측에서 수용했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전문위원 성소미** 지금 일단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기부의 수정의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또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은 중기부에서 오늘 심의 내용을 참고해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요.

○**허종식 위원** ‘상당한 이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거지.

○**소위원장 김원이** 시행령에다가 열거하는 것으로.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위원장님, 중기부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구 수정을……

○**소위원장 김원이** 한번 자구 수정안을 줘 보세요, 정부 측에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7조의2 보시면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소위원장 김원이** 페이지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57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예, 57쪽.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1항 보시면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도로 저희가 문안 제시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어때요, 오세희 위원님? 괜찮습니까?

‘객관적 사실’ 앞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넣자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그러면 대통령령에 이 객관적 사실이 열거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원이 오세희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세희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그렇게 조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은 59쪽입니다.

상생협약 이행 불가 시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2항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2항도 그러면 1항과 같아……

○소위원장 김원이 몇 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58페이지 보시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렇게……

○박형수 위원 아니요, 2항은 필요가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1항만 하는 걸로……

○박형수 위원 그것은 1항에다 규정해 놓으면 ‘1항에 따른’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1항에 따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합의된 거지요? 정부의 수정안에 다 동의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 등의 의무불이행으로 상생협약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기업 등과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철회하게 되는데 이후에 대기업 등의 귀책 사유로 상생협약이 불이행되는 경우에도 지정 신청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별도로 권리를 구제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에게 재신청을 보장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앞에와 마찬가지로 협약사항 불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동반위가 하는 그런 절차가 추가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약이 평가된 후에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화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64쪽입니다.

지정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의 인수·개시 그리고 확장 일시정지 명령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 등이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을 일시정지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공표 그리고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각주 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지정 고시가 있을 때까지 중기부장관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확장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과 입법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이미 지금 동일한 목적의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67쪽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재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약에 관한 경과 조치도 두고 있고 안 부칙 4조에서는 대기업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앞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 규정이 이미 개정되었으므로 안 부칙 4조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4조 삭제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박형수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71쪽입니다.

박성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대기업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과 현행법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본법으로서의 행정기본법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제 정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행정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춰 개정·정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령 개정 등을 위해서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으로 수정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동의합니다.

○김성원 위원 추후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성민 의원님이 이 법 안 냈으면 제가 계속심사로 남겨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꼭 속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박성민 의원님 법안이라서 그냥 통과시킨다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걸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8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76쪽입니다.

박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출연금 외에도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으로 해당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의 사용 범위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달에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논의할 때 협동조합 출연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참고자료에 내용들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조성과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파악이 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회비를 내지 않은 자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과 동일하게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용한 공동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적어도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수정의견 주신 부분에 있어서 7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이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충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회원과 비회원 간의 문제인데 출자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여기 있는 것처럼 지원을 해야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결국은 공동사업지원자금이 많이 조성되고 활용이 많이 돼야 되는데 조성하는 입장에서, 출연하는 입장에서 보면 회원사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서 비회원까지 포함해 달라는 그런……

○오세희 위원 그런 문제는 아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원사는 검증이 된 거거든요. 명확하게 회원이 규정돼 있고 그 업태가 규정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부 보조금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게 너무 난립돼 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같이 검증 없이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답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말씀 주신대로 회원하고 비회원 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회원에 대한 우대조치 추가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우대 조항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류라든지 명확한 인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명확한 곳의 사업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검증이 안 된 곳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느냐 이건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기금의 지원 대상이 비회원일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중기중앙회 측과 논의를 해서 정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공동사업지원자금 이거는 어떻게 조성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 협동조합들의 출연을 통해서 조성이 됩니다. 여러 기관들이 출연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밑에 보시면 출연 주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

○**박형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출연 주체에 대한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106조 8항 1호의 ‘나’ 보시면요 기업의 출연금,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이고 이번 개정안에 보시면 ‘나’의 기업을 ‘기업,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의 출연을 통해서 기금이 조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여기서 기업의 출연금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회원이 아닌 기업도 출연할 수 있는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보통 대기업이나 금융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상생 차원에서 기업들이 기금에 출연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대기업 출연을 생각하시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해서 의견 청취를 해보신 적이 있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중앙회를 통해서……

○**박지혜 위원** 중앙회가 원하는 사안인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중앙회에서 희망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 회원사로 한정되는 부분이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회원사가 몇 %나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아마 회원사는 제한적일 거고 또 출연하는 측에서는 중소기업 전반에 효과가 미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출연의 명분이 더 있다랄지……

○**서왕진 위원** 다만 오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이 아닌 대상을 지원할 때 그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절차나 심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전제가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더 의견 없으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오히려 이 조항 확대하는 걸 원한다고 했지요? 그건 확실한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아까 중기협동조합법의 이미 다른 조항에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거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서 별도 항목을 추가하시는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그거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면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가 확대하는 걸로 오인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조항을 원용할 필요 없이 이 조항에다가 아예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든지 그거를 넣어 놓는 것이 명확하게 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안하고 같은 거지요,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정부 측에서 동의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게 하시지요? 법안을 크게 흔드는 거 아니면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세희 위원** 위원님.

○**오세희 위원** 그러면 비회원의 자격 요건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지 잘못하면 쪼개기도 하고 정회원이 그걸 외부에다 쪼개기 해서 또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비회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좀 명확히 한다. 이거는 물론 공정적인 면도 있는데 잘못하면 외부의 돈 그런 상생 기금을 많이 받았는데 돈이 미집행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비회원까지 넓히자, 자기 회원들 갖고만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건데 그러면 비회원의 자격 요건, 그냥 무조건 비회원이 아니라 회원 외의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가 이 사용처를 말씀을 드리면요, 79페이지 보시면 사용 범위가 '공동기술 개발 및 상표개발, 공동시험연구, 공동구매·판매, 국내외 판로 개척,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정보화 사업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별로 참여 기업을 모집할 때 오세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별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오세희 위원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오세희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전문위원안으로 동의가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82쪽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등 지원을 추가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위해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산업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 ‘산업데이터’라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서 산업부장관이 지원·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데이터’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산업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데이터의 범위를 산업데이터로 축소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로 명기하는 게 보다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데이터’로 용어 수정에 대해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네요. 산업데이터보다 데이터가 훨씬 포괄적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84쪽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과 김원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조합 등의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요청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합 등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합원들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단체적 계약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입법취지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정위에서는 기존에 신중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내 왔는데요. 어제 날짜로 좀 더 문구를 보완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중검토에서 약간 시간을 달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전문위원 성소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처 간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세희 위원님, 따로 말씀 주실 것 없습니까?

○오세희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제가 제 법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금 유연해진 것 같아서 시간을 갖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입법례가 있어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은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기존에 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본부—본사지요—에 대하여 계약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이 조항인데요. 실제 다른 입법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자기들이 검토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김동아 위원 아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더 얘기하세요.

○김동아 위원 이것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거기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하위 법령에서 정하면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굳이 또 기다렸다가 한세월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지.

○소위원장 김원이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려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성담합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입법례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하도급 관련해서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모두 취지는 있겠지만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법원에서도 경성담합 부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위원님. 다만 공정위의 신중검토는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신중검토라기보다는 세부 내용에 대한 신중검토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만이 협의 대상이지만, 협동조합법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하겠지만 공공기관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세부 내용에 대한 것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자만 한정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대상까지

포함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법안에 있기 때문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참고로 제가 조금, 더 논쟁하기보다는 제가 참고로 몇 가지……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중소제조업체 50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기업 중 102곳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20.4%에 해당되는 비율인데 이게 2011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한국경제인협회, 옛날로 따지면 전경련이지요. 전경련에서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대답한 23%하고 거의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즉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너무 순놓고 있지 않았나라는 비판을 들어도 마땅한데 이러한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이 없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협의권을 갖는 것은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처 간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건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리고 실제 가맹……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원이 예,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저도 김원이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해서 조금…… 첨언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마는 기억나시냐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어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중소기업이 처한 위치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가 이걸 그냥 단순한 가격담합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가격담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합법화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검토라고 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개정안의 방향이 맞다고 보고 공정위가 아주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변경을 시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계약당사자가 어떤 조건에 맞지 않아서 협의할 때 이런 부분 등을 중소기업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의 거래조건 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담합조건, 경성담합 등을 법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공정위의 우려도 있지만 이런 부분 등을 어떤 부분으로 요청하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그때마다 중기부장관이 조정을 한다는 것이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굉장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 조항을 도입하려는 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진욱 위원 저 조금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예,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우리가 시장이라고 할 때는 합리성 그리고 정당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 무엇인가 훌륭한 그걸 상정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소기업이 딛고 있는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장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힘에 의해서 규율되는 시장입니다.

제가 올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는 사례들 또 실제로 제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보면 시장질서에서 공정위가 개입해야 될 곳은 오히려 이런 곳인데……

이게 그냥 공정위는 기준에 있었던 가격담합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의 단체행동 이런 방식으로만 지켜보고 있는데 오히려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가하고 있는 거의 폭력적인 방식의 거래조건 강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법안의 제40조의2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시장질서에 대해서 더 공정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강승규 위원님, 중소기업부 수정의견은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고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 조건으로 놔뒀다는 말씀 드리고. 제 안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안이 아니라 오세희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보다 많이 완화된 안에 대해서 중소기업부가 동의한 거지요? 수정의견을 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저도 이 중소기업부 의견에 동의해 줬으니까, 어느 정도 저도 양보를 한 거니까……

또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저는 이게 중소기업이 거래 단계에서…… 저게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사이에, 우리 산자위에서 이걸 통과해도 법사위에 가면서 서로 공정위의 의견이 들어가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일본하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자위에서 이의 없으면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가는 동안에 공정위의 의견을 좀 담으면 어떨까.

○소위원장 김원이 그것은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 법사위한테 우리……

○김성원 위원 저기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원이 잠깐 오세희 위원님 얘기를 먼저 마무리하고 발언권 드릴게요.

오세희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이 결정할 것을 다른 상임위, 법사위에다 넘기자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이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법안을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숙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전향적인 자세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의원총회가 있어 가지고 아까 회의 하시기 전에 양해드렸던 대로 위원장님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같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정회를 요청드리고 나중에 추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차관님, 다음번 법안소위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가지고 수정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안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법안소위 때 공정위를 같이 참석시켜서 공정위 측 입장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 것보다는 조정해서 안을 갖고 오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더 어려워지면 저희하고 미리 사전에 상의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여기서 결론 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소법안소위니까 여기서 굳이 다른 부처의 누군가를 붙여 가지고 이 현장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정부 간에 미리 사전 협의 충분히 하시고, 만약에 굳이 배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미리 회의가 열리기 전에 양해 구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런데 2시에 본회의까지 잡혀 있어서 개회시간을……

○허종식 위원 본회의 끝나고 하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오늘 본회의가 한 40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필리버스터 신청할 가능성성이 높지요.

그래서 일단은 오후 4시쯤 개회하는 걸로 해 놓고 본회의 산회하고 계속하는 걸로 할까요?

강승규 위원님하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 위원(13인)

강승규 구자근 김동아 김성원 김원이 박지혜 박형수 서왕진 오세희 이재관  
정동만 정진욱 허종식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성소미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정책기획관 김우중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상생협력정책관 김우순